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실시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방 대책 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등 (안 제4조)
- 다. 야생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라. 시민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45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8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정미섭,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실시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방 대책 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등 (안 제4조)
- 다. 야생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라. 시민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